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

◆ 디지털시대, 달라진 저작권 환경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상의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새 저작권법은 그러나 아직 세부지침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요즘 출판계는 작가, 출판사, 인쇄업체 누구할 것 없이 모이기만 하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정부가 디지털시대를 겨냥해 만든 새 저작권법에는 기존 출판계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두 가지 조항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 저작권이라 할 수 있는 「전송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자도서관구축허용」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작가들은 기존처럼 종이책 형태로 자신의 글을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신작을 발표하거나 이미 발간된 작품을 재구성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도 있게 됐다.

또 공공도서관들은 수십년씩 묵혀있는 장서들을 모두 디지털파일로 만들어 컴퓨터를 통해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타 도서관과 부족한 자료들을 온라인 전송을 통해 서로 맞교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

우선 대형 출판사들이 생존권사수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데다 정부가 업계의 반발을 조율하느라 구체적인 운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현재 기존 출판권을 확대한 편집권을 내세워 전자책에서도 20~30%의 인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자도서관 구축에 있어서도 출판물

의 무단복제와 불법전송을 막기 위해 암호화 및 워터마킹같은 기술조치를 반드시 탑재해야 하고 출판사와 저작권단체들이 연합해 설립한 「복제전송권관리센터」에 저작권료를 내도록 새 저작권법에 명문화시켰다. 정부는 관련시행령과 세부지침을 이달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좁히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논쟁에 휘말린 곳은 비단 출판계 뿐만 아니다. MP3같은 디지털음악은 「MP3=음반」이라고 생각하는 음반사들의 주장으로 제대로 시장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업계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방송」이 아니라 「웹캐스트」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으나 스트리밍서비스를 제한하는 「전송권」의 발효로 저작권문제 해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저작권문제가 사회적, 산업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저작권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은 디지털로 변해 저작물의 유통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법은 이를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도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환경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며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책이나 전자도서관, MP3, 인터넷방송 등의 저작권 문제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나는 불법복제, 기는 저작권법

정부는 소프트웨어, 게임, 음반 등 불법 복제물 단속에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불법복제

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WTO 회원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마다 국내에서 불법복제되는 저작물들은 얼마나 될까.

새 저작권법에 따라 지난 1일 설립된 「복제전송권관리센터」가 밝힌 국내 문헌저작물 및 출판물의 무단복제 규모는 연간 15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센터는 시중 복사점이나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일정 사용료를 징수한 뒤 저작물의 복제허락을 내줄 계획이며 대신 불법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내 음반시장은 불법복제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손꼽히고 있다. 수많은 마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연간 50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히트곡이나 오기만 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히트곡들만 따로 모아 만든 무단복제 카세트테이프와 CD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정품이 팔릴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연간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의 절반이 아예 불법복제물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결국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불법복제물로 국내 문화 산업의 뿌리는 점점 고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불법복제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갈수록 고도화되고 범망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을 불법 MP3파일의 온상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단속에서 IFPI는 국내에서 서버를 두고 있는 100여 개의 사이트를 경고조치하고 일부는 폐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억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옮겨다니는 불법사이트들을 적발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IFPI 측의 설명이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MP3 파일 교환프로그램 「소리바다」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 프

로그램을 이용해 공짜 음악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자체 서버에 MP3파일의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저작권 소송을 피해야 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 법적 제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언제까지 「종이 호랑이」 노릇만 할 것인가.

최근들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에서는 지난해 이미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책임을 강화한 「디지털 천년 저작권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일본도 현재 문부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규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터넷업체들이 자사 인터넷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를

묵과할 때는 인터넷업체들이 처벌을 받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 저작권법에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했고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 디지털음악을 즐기는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미국에만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무료 MP3교환소프트웨어인 「냅스터」는 지금도 매일 15만 카피 이상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다운로드되고 있다.

◆ 개정 저작권법의 역할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최근 전세계 지식정보산업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양태 패러다임이다. 고도화하는 디지털기술에 대응, 불



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방어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사이버시대에 맞는 강력한 디지털 저작권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카페레프트 주창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외형적으로는 저작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면에는 일부 강대국들이 정보독점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고착화하려는 경제적 폐권주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따라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해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지식정보사회, 정보 민주주의의 참모습이라는 설명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다소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도 이같은 목적이 잘 반영돼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전송권」 조항을 신설하고 사적(私的) 이용의 한계를 넘는 공중 복사점에서의 저작물복제를 제도적으로 억제도록 했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복제전송권관리센터」의 설립을 명시했다.

반면 저작자와 출판업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허락해 서적이나 사진 등 각종 저작물을 디지털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컴퓨터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토록 했으며 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에 맞게 재정비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저작권법이 과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수준에 맞춰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송권」의 신설만으로는 출판계가 겪고 있는 「전자책 권리 논쟁」이나 음반업계의 「MP3파일 저작권 분쟁」과 같은 디지털환경에 따른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전자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원격검색 및 열람이 가능해야

하는데 암호화나 워터마킹같은 불법복제방지기술을 탑재해도 결국 전송권에 묶여 원저작자들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문화(死文化)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비하고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통한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설된 「복제전송권관리센터」에 대한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저작권법이 디지털시대의 문화산업 기본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그리고 국내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작업이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한 디지털 환경을 보다면 밀히 조사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보다 한발 늦을지라도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은 저작자들의 땀과 정신이 배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저작자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페라이트건, 카페레프트건 간에 이는 모두 저작자가 선택하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침조 전자신문

월간 2000 · 10